경기도 고시 제2026-188호

# 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. 7. 29.
경 기 도 지 사

1.산업단지 개요(변경)

가. 면적 및 관리기관(변경없음)

○ 위 치 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
○ 면 적
- 산업단지 : 1,686,585.4㎡
- 진입도로 14,195.0㎡
○ 관리기관 :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

나. 조성목적(변경없음)

○ 양촌지역의 밀집공장을 정비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김포시 지역발전 도모

다. 추진경위(변경)

○ '01. 12. 10 : 2016년 김포도시기본계획승인
○ '02. 07. 23 : 공업지역 공급물량배정
○ '04. 09. 30 :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
○ '06. 06. 14 : 실시계획승인
○ '10. 03. 29 : 실시계획 및 (변경)승인 고시, 사업준공 인가 공고
○ '12. 03. 29 :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○ '12. 08. 06 : 개발계획(8차) 및 실시계획(6차) 변경 승인 고시
○ '13. 09. 16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3-263호)
○ '13. 10. 29 : 준공인가 공고(경기도공고 제2013-1271호)
○ '14. 03. 31 :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고시 제2014-77호)
○ '15. 02. 03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(경기도고시 제2015-5014호)
○ '15. 10. 05 :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(경기도고시 제2015-5170호)
○ '16. 06. 07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6-5131호)
○ '17. 01. 13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7-5010호)
○ '18. 06. 22 :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8-5129호)
○ '18. 11. 30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8-5222호)
○ '19. 04. 12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19-5050호)
○ '20. 01. 21 :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0-5018호)
○ '20. 08. 18 :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0-5169호)
○ '21. 01. 06 :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0-5288호)
○ '23. 10. 10 :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3-273호)
○ '25. 07. 10 :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(경기도고시 제2025-273호)

## 라. 분양현황(변경없음)

| 구 분 | | 분양대상(㎡) | 분양현황(㎡) | | | 조성기간 | 사업시행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합 계 | 분 양 | 미분양 | | |
| 계 | | 1,108,461.4 | 1,108,461.4 | 1,108,461.4 | - | | |
| 산업시설구역 | | 939,328.6 | 939,328.6 | 939,328.6 | - | '03~'10<br>'17.9~'19.6 | 김포시<br>경기도시공사<br>김포시<br>중앙종합건설(주) |
| 지원시설구역 | | 143,587.2 | 143,587.2 | 143,587.2 | - | | |
| 공공시설용지 | 계 | 25,545.6 | 25,545.6 | 25,545.6 | - | - | - |
| | 주차장 | 10,438.3 | 10,438.3 | 10,438.3 | - | | |
| | 변전소 | 4,401.2 | 4,401.2 | 4,401.2 | - | | |
| | 학교 | 10,706.1 | 10,706.1 | 10,706.1 | - | | |

※ 1) 상기 사항은 분양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2) 경기도 고시 제2020-5118(2020.01.21.)호의 변경분에 한하여 김포시 및 중앙종합건설(주)에서 2017.9~ 2020.12 기간 동안 조성

## 마. 입주현황(변경없음)

| 구 분 | 입주업체수 | | | 면 적(㎡)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계 | 제조업 | 기타 | 계 | 제조업 | 기타 |
| 계 | 1,190 | 209 | 981 | 939,328.6 | 839,392.0 | 99,936.6 |
| 2026. 02월 현재 | 1,190 | 209 | 981 | 939,328.6 | 839,392.0 | 99,936.6 |
| 향후계획 | - | - | - | - | - | - |

※ 1)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바. 입지여건(변경)

(기정)

| 시설명 | 총계획 | 개발기간 | 시행기관 |
|---|---|---|---|
| 도 로(m) | • 대로 : L=4,747m, B=25~30m<br>• 중로 : L=10,352m, B=12~20m<br>• 소로 : L=2,740m, B=2~11m | '03~'10<br>'17.9~'20~12 | 김포시<br>경기도시공사<br>김포시<br>중앙종합건설(주) |
| 용 수(㎥/일) | • 생활용수(Q) = 2,607.0㎥/일<br>• 공업용수(Q) = 6,669.7㎥/일 | '03~'10 | 김포시<br>경기도시공사 |
| 폐기물처리 | • 매립, 소각 및 위탁처리 | 〃 | 〃 |
| 오·폐수처리(㎥/일) | • 6,800(1차:3,400, 2차:3,400) | 〃 | 〃 |
| 전 력(Mwh/년) | • 584,212 | 〃 | 한국전력공사 |
| 통 신 (회선) | • 4,755 | 〃 | ㈜ KT |

※ 경기도고시 제2020-5118(2020.01.21.)호의 변경분에 한하여 김포시 및 중앙종합건설(주)에서 2017.9~2020.12 기간 동안 조성

(변경)

| 시설명 | 총계획 | 개발기간 | 시행기관 |
|---|---|---|---|
| 도 로(m) | • 대로 : L=4,747m, B=25~30m<br>• 중로 : L=10,352m, B=12~20m<br>• 소로 : L=2,740m, B=2~11m | '03~'10<br>'17.9~'20~12 | 김포시<br>경기도시공사<br>김포시<br>중앙종합건설(주) |
| 용 수(㎥/일) | • 생활용수(Q) = 2,607.0㎥/일<br>• 공업용수(Q) = 6,656.6㎥/일 | '03~'10 | 김포시<br>경기도시공사 |
| 폐기물처리 | • 매립, 소각 및 위탁처리 | 〃 | 〃 |
| 오·폐수처리(㎥/일) | • 6,800(1차:3,400, 2차:3,400) | 〃 | 〃 |
| 전 력(Mwh/년) | • 583,708 | 〃 | 한국전력공사 |
| 통 신 (회선) | • 4,755 | 〃 | ㈜ KT |

※ 경기도고시 제2020-5118(2020.01.21.)호의 변경분에 한하여 김포시 및 중앙종합건설(주)에서 2017.9~2020.12 기간 동안 조성

2.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
가. 기본방향(변경없음)

1) 기본방향

○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집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

○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, 지원시설구역, 공공시설구역,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, 부득이한 경우 산업시설 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

2) 추진방향

○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

○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

○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 유도

나.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(변경)

1) 용도별 구획 면적(변경없음)

(단위 : ㎡)

| 구분 | 계 | 산업시설구역 | 지원시설구역 | 공공시설구역 | 녹지구역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면적(㎡) | 1,686,585.4 | 939,328.6 | 143,587.2 | 371,633.1 | 232,036.5 |
| 비율(%) | 100.0 | 55.7 | 8.5 | 22.0 | 13.8 |

□ 산업시설구역 세부(변경없음)

(단위 : ㎡)

| 공장시설 | 물류시설 | 지식산업시설 | 폐기물처리시설 | 기 타 |
|---|---|---|---|---|
| 839,392.0 | - | 99,936.6 | - | - |

2)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(변경)

가) 산업시설구역(변경)

(1) 산업시설용도(변경)

(기정)

① 「산집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함

② 산업시설용도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1에서만 가능함

③ 업종별 배치기준 준수

(변경)

① 「산집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에 한함

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
③ 산업시설용도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1에서만 가능함

④ 업종별 배치기준 준수

(2) 지식산업시설용도(변경)

(기정)

① 지식산업시설의 입주 가능 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시 승인받은 업종에 한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다.

②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호의 시설로 하며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.(다만, 1호와 3호가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경우 1호를 적용한다)

③ 불허용도 :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2항 3호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근린생활 시설 중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 용도는 불허
④ 지식산업시설용도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1에서만 가능함

(변경)
① 지식산업시설의 입주 가능 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시 승인받은 업종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에 한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다.
②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호의 시설로 하며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.(다만, 1호와 3호가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경우 1호를 적용한다)
③ 불허용도 :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2항 3호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근린생활 시설 중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사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 용도는 불허
④ 지식산업시설용도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1에서만 가능함

나) 지원시설구역(변경)
(기정)
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②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1에서만 가능함

(변경)
①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③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#1에서만 가능함

다) 공공시설구역(변경)
(기정)
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
(변경)
①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
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

라) 녹지구역(변경)
(기정)
①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
(변경)
①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하며,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설치)

3) 용도별 구획 평면도 : 별표#2 (변경없음)

다. 업종별 배치계획(변경)

1) 업종별 배치현황(변경)

(기정)

(단위 : ㎡)

| | 업 종 | | 배 치 계 획 | | 2025.3월 현재 | | 향후계획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
| 합 계 | | | 1,190 | 939,328.6 | 1,190 | 939,328.6 | - | - |
| 산업시설용도 | 통합배치 | | 24 | 58,258.9 | 24 | 58,258.9 | | |
|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 | 9 | 41,289.8 | 9 | 41,289.8 | | |
| |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(C17), 금속가공제품(C25), 가구제조업(C32) | 5 | 16,490.6 | 5 | 16,490.6 |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 | 20 | 105,333.8 | 20 | 105,333.8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 | 1 | 4,153.0 | 1 | 4,153.0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금속가공제품(C25), 가구 제조업(C32) | 3 | 6,850.6 | 3 | 6,850.6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3 | 39,283.3 | 13 | 39,283.3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8,936.1 | 1 | 8,936.1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3,036.9 | 1 | 3,036.9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 | 2,720.3 | 1 | 2,720.3 | | |
| 산업시설용도 |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 | 2 | 5,506.4 | 2 | 5,506.4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 | 1 | 1,717.0 | 1 | 1,717.0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4,068.2 | 1 | 4,068.2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 | 1 | 2,032.2 | 1 | 2,032.2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 | 4 | 22,459.3 | 4 | 22,459.3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3,022.5 | 1 | 3,022.5 | | |
| | 1차 금속 | 1차 금속 제조업(C24) | 17 | 73,052.6 | 17 | 73,052.6 | | |
| | | 1차 금속(C24), 금속가공제품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2 | 6,593.0 | 2 | 6,593.0 | | |
| | 금속가공 제품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 | 18 | 72,669.2 | 18 | 72,669.2 | | |
| | | 금속가공제품(C25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1 | 3,051.3 | 1 | 3,051.3 | | |
| | | 금속가공제품(C25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(C17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C21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 | 1 | 3,374.7 | 1 | 3,374.7 | | |

| | 업 종 | | 배 치 계 획 | | 2025.3월 현재 | | 향후계획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
| 산업시설용도 | 기타기계 및 장비 |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 | 40 | 183,498.3 | 40 | 183,498.3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2 | 11,250.5 | 2 | 11,250.5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1차 금속(C24) | 2 | 8,089.7 | 2 | 8,089.7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금속가공제품(C25) | 3 | 13,452.7 | 3 | 13,452.7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금속가공제품(C25), 전기장비(C28) | 1 | 3,219.8 | 1 | 3,219.8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 | 1,980.2 | 1 | 1,980.2 | | |
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 | 10 | 29,769.1 | 10 | 29,769.1 | | |
| 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2 | 10,333.2 | 2 | 10,333.2 | | |
| 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 | 3,223.2 | 1 | 3,223.2 | | |
| 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, 금속가공제품(C25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 | 2 | 8,261.0 | 2 | 8,261.0 | | |
| |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 | | 9 | 32,308.7 | 9 | 32,308.7 | | |
| |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| 전기장비 제조업(C28) | 3 | 20,266.2 | 3 | 20,266.2 | | |
| | | 전기장비(C28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 | 1 | 3,607.0 | 1 | 3,607.0 | | |
| | 가구 및 기타제품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3 | 13,219.6 | 3 | 13,219.6 | | |
| |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3,357.6 | 1 | 3,357.6 | | |
| |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(C17) | 1 | 9,655.5 | 1 | 9,655.5 | | |
| 지식산업센터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(C17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, 1차 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| 981 | 66,889.8 | 864 | 66,889.8 | | |
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(기계 및 가구, 도금업 제외) | | | 33,046.8 | 117 | 33,046.8 | | |

※업종코드 13번은 학운리 2762, 2980-1, 2760, 2771-3, 2710, 2962, 2958, 2758, 2961, 3084, 2970번지에 한함[C13업종 중 13229번(기타 직물제품 제조업)에 한함]
※업종코드 21번은 학운리 2762, 2980-1번지에 한함[C21업종 중 21300번(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)에 한함]

(변경)

| | 업 종 | | 배 치 계 획 | | 2026.3월 현재 | | 향후계획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
| 합 계 | | | 1,190 | 939,328.6 | 1,190 | 939,328.6 | - | - |
| 산업시설용도 | 통합배치 | | 24 | 58,258.9 | 24 | 58,258.9 | | |
|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 | 9 | 41,289.8 | 9 | 41,289.8 | | |
| |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(C17), 금속가공제품(C25), 가구제조업(C32) | 5 | 16,490.6 | 5 | 16,490.6 |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 | 20 | 105,333.8 | 20 | 105,333.8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 | 1 | 4,153.0 | 1 | 4,153.0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금속가공제품(C25), 가구 제조업(C32) | 3 | 6,850.6 | 3 | 6,850.6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3 | 39,283.3 | 13 | 39,283.3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8,936.1 | 1 | 8,936.1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3,036.9 | 1 | 3,036.9 | | |
| 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 | 2,720.3 | 1 | 2,720.3 | | |
| 산업시설용도 |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 | 2 | 5,506.4 | 2 | 5,506.4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 | 1 | 1,717.0 | 1 | 1,717.0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4,068.2 | 1 | 4,068.2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 | 1 | 2,032.2 | 1 | 2,032.2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 | 4 | 22,459.3 | 4 | 22,459.3 | | |
| 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3,022.5 | 1 | 3,022.5 | | |
| | 1차 금속 | 1차 금속 제조업(C24) | 17 | 73,052.6 | 17 | 73,052.6 | | |
| | | 1차 금속(C24), 금속가공제품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2 | 6,593.0 | 2 | 6,593.0 | | |
| | 금속가공제품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 | 17 | 70,714.4 | 17 | 70,714.4 | | |
| | | 금속가공제품(C25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1 | 3,051.3 | 1 | 3,051.3 | | |
| |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가구 제조업(C32) | 1 | 1,954.8 | 1 | 1,954.8 | | |
| | | 금속가공제품(C25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(C17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C21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 | 1 | 3,374.7 | 1 | 3,374.7 | | |

| | 업 종 | | 배 치 계 획 | | 2026.3월 현재 | | 향후계획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 업체수 | 면적(㎡) |
| 산업시설용도 | 기타기계 및 장비 |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 | 41 | 185,331.1 | 41 | 185,331.1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2 | 11,250.5 | 2 | 11,250.5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1차 금속(C24) | 2 | 8,089.7 | 2 | 8,089.7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금속가공제품(C25) | 3 | 13,452.7 | 3 | 13,452.7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금속가공제품(C25), 전기장비(C28) | 1 | 3,219.8 | 1 | 3,219.8 | | |
| 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 | 1,980.2 | 1 | 1,980.2 | | |
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 | 10 | 29,769.1 | 10 | 29,769.1 | | |
| 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1 | 8,500.4 | 1 | 8,500.4 | | |
| 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 | 3,223.2 | 1 | 3,223.2 | | |
| 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, 금속가공제품(C25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 | 2 | 8,261.0 | 2 | 8,261.0 | | |
| |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 | | 9 | 32,308.7 | 9 | 32,308.7 | | |
| |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| 전기장비 제조업(C28) | 3 | 20,266.2 | 3 | 20,266.2 | | |
| | | 전기장비(C28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 | 1 | 3,607.0 | 1 | 3,607.0 | | |
| | 가구 및 기타제품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3 | 13,219.6 | 3 | 13,219.6 | | |
| |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 | 3,357.6 | 1 | 3,357.6 | | |
| |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(C17) | 1 | 9,655.5 | 1 | 9,655.5 | | |
| 지식산업센터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(C17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, 1차 금속 제조업(C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| 981 | 66,889.8 | 864 | 66,889.8 | | |
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(기계 및 가구, 도금업 제외) | | | 33,046.8 | 117 | 33,046.8 | | |

※업종코드 13번은 학운리 2762, 2980-1, 2760, 2771-3, 2710, 2962, 2758, 2961, 3084, 2970번지에 한함[C13업종 중 13229번(기타 직물제품 제조업)에 한함]
※업종코드 21번은 학운리 2762, 2980-1번지에 한함[C21업종 중 21300번(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)에 한함]
※양촌산업단지내 모든 구역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(D35114)에 한함) 허용. 단, 관리기관에 입주계약,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.

2) 업종별 배치기준(변경없음)

○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

○ 업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

○ 단지 중심의 4차로 주변에 단지의 쾌적성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가급적 광필지(16,529㎡이상)로 공급계획

○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

○ 산집법 시행령 제43조6항의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업(태양에너지발전설비에 한하며, 토지가 아닌 건물 옥상에 배치). 단, 관리기관에 입주계약, 구조물설치 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.

3) 업종별 배치계획 : 별표#3(변경)

라. 입주관리계획(변경)

1) 입주대상업종(변경)

(기정)

| 입 주 업 종 | | | |
|---|---|---|---|
| 13 | 섬유제품 제조업;의복제외(13229) | 26 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
| 17 |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27 |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
| 18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28 | 전기장비 제조업 |
| 21 |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300) | 29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| 22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32 | 가구 제조업 |
| 24 | 제1차 금속산업 제조업 | 33 | 기타 제품 제조업 |
| 25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 | 35 |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

(변경)

| 입 주 업 종 | | | |
|---|---|---|---|
| 13 | 섬유제품 제조업;의복제외(13229) | 26 |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
| 17 |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27 |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
| 18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28 | 전기장비 제조업 |
| 21 |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300) | 29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
| 22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32 | 가구 제조업 |
| 24 | 제1차 금속산업 제조업 | 33 | 기타 제품 제조업 |
| 25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 | 35 |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

※양촌산업단지내 모든 구역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(D35114)에 한함) 허용. 단, 관리기관에 입주계약,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.

【입주제한 업종】 [별표#4] (변경없음)

- 공업용수 다소비 및 입주 부적격 업종
-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
-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(다만, 생산공정중 화석연료(액체 및 고체)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)
-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(다만,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제외)
-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사업장 내지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

2) 입주자격(변경)

가) 산업시설구역(변경)

(기정)

○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

(변경)

○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나) 지원시설구역(변경)

(기정)

○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

○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

(변경)

○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

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○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

3) 입주 우선 순위(변경없음)

○ 1순위 : 김포시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

○ 2순위 :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하는 업체

○ 3순위 : 기타 양촌일반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

※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되는 경우에는 입주심의 평가표에 의하며,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

4) 입주절차(변경없음)

○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

5) 분양(분할)한도(변경없음)

○ 최소분양면적 : 1,650㎡ 이상 (단,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1호내지3호에 해당하는 경우 900㎡이상)

마. 사후관리계획(변경없음)

1) 산업용지 관리

○ 산집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,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

2) 환경관리

○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

○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

○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위하여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

○ 폐수처리장 시설개요

- 규 모 : 17,377.3㎡
- 처리용량 : 6,800㎥/일(1차:3,400 준공, 2차:3,400)
- 처리방법 : A2O+응집침전+여과처리방법

- 수질기준

(단위:mg/L)

| 구 분 | BOD | COD | SS | T-N | T-P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방류수질 | 9 | 30 | 10 | 20 | 2 |

○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소각후 매립
※ 폐기물 처리 방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
○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

3) 안전관리
○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, 관련기관과 재해복구협조체제 구축
○ 산집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재해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

바.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(변경없음)
1) 공장설립 지원
○ 공장설립 업무 인·허가 절차 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
○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2) 생산활동 지원
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○ 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
○ 기술개발 및 수출, 무역,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
○ 구인·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
○ 각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

3)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
○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
○ 단지내 근로자복지회관, 어린이집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휴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부여

4)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
○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
○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
○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
5) 지원시설 설치계획
○ 관리청사, 금융시설, 후생복지, 차량관련시설, 공공업무시설 등

사.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1)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
2)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
3) 분양용지의 불법전매·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
[별표# 1]

1. 산업시설용지(변경)

| 위 치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산업시설용지 | 용도 | 허용 | 기정 | ○ 「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|
| | | | 변경 | ○ 「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<br>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 |
| | | 불허 |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
| | 주 차 | | ○ 150㎡ 당 1대 (기계식주차장 불허) | |
| | 건폐율 | | ○ 80%이하 | |
| | 용적률 | | ○ 350%이하 | |
| | 건축선 | | ○ 15M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○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| |

2. 지식산업센터(변경)

| 위 치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식산업센터 | 용도 | 허용 | 기정 | ○ 입주기능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다<br>○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 제2항 각 호의 시설로 하며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한다. (다만, 1호와 3호가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경우 1호를 적용하며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 용도는 불허한다.<br>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 제2항 |
| | | | 변경 | ○ 입주기능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른다<br>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<br>○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 제2항 각 호의 시설로 하며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한다. (다만, 1호와 3호가 동시 적용이 가능할 경우 1호를 적용하며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동물병원, 단란주점, 의약품도매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 용도는 불허한다.<br>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 제2항 |
| | | 불허 |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
| | 주 차 | | ○ 150㎡ 당 1대 (기계식주차장 불허) | |
| | 건폐율 | | ○ 80%이하 | |
| | 용적률 | | ○ 350%이하 | |
| | 건축선 | | ○ 15M이상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○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| |

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의4 제2항

1. 금융·보험·교육·의료·무역·판매업(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하기 위한 시설
2. 물류시설,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·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(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)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(음·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)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
   가.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: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)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(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) 이하인 시설
   나.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: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3. 단독주택용지(변경)

| 위 치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단독주택용지 | 용도 | 허용 | 기정 |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(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 제외)<br>○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만 허용하며,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% 이하 적용 |
| | | | 변경 |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(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 제외)<br>○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만 허용하며,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% 이하 적용<br>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 |
| | | 불허 |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
| | 세대수 | | ○ 4세대 이하 | |
| | 건폐율 | | ○ 60% 이하 | |
| | 용적률 | | ○ 150% 이하 | |
| | 높이 | | 최고층수 | 4층이하 |
| | | | ○ 지붕경사도는 처마에서 1.5M 이하 | |
| | 주차 | | ○ 김포시주차장조례 한하며, 기계식 주차장 불허 | |
| | 건축선 | | ○ 도로경계선에서 1.5M 후퇴 | |

4. 지원시설용지(변경)

| 위 치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시설용지 | 용도 | 허용 | 기정 |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 투표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장례식장, 격리병원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가항의 아동 관련 시설<br>○ 외국인 지원센터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<br>○ 기타공공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<br>※ 각 필지에 해당되는 용도<br>○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6호 가항의 종교집회장 |
| | | | 변경 | 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 투표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장례식장, 격리병원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가항의 아동 관련 시설<br>○ 외국인 지원센터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<br>○ 기타공공시설용도 및 그 부대·복리시설<br>※ 각 필지에 해당되는 용도<br>○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6호 가항의 종교집회장<br>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 |
| | | 불허 |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
| | 건폐율 | | ○ 70%이하 | |
| | 용적률 | | ○ 400%이하 | |
| | 주 차 | | ○ 김포시주차장조례 한하며, 기계식 주차장 불허<br>※ 단, 암반등의 지질로 인하여 토지굴착 등에 난공사가 예상되는 경우(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후 검토)에 한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. | |
| | 건축선 | | ○ 주출입구 정면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 ○ 25M이상의 도로에서 진출입 불허 | |

5. 주차장 시설용지(변경)

| 위 치 | 구 분 | | 계 획 내 용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차장 시설용지 | 용도 | 허용 | 기정 | 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<br>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1항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<br>※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는 다음과 같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 투표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(봉안당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나항의 세차장 |
| | | | 변경 | 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<br>○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1항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<br>※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는 다음과 같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·안마원, 종교집회장, 제조업소, 총포판매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(마권 장외 발매소, 마권 전화 투표소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(봉안당 제외)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<br>○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나항의 세차장<br>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태양력 발전업에 한함) |
| | | 불허 | 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 |
| | 건폐율 | | ○ 90%이하 | |
| | 용적률 | | ○ 450%이하 | |
| | 형태및외관 | | ○ 주차타워일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| |
| | 건축선 | | ○ 주출입구 정면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 ○ 25M이상의 도로에서 진출입 불허 | |
| | 높 이 | | ○ 7층 이하 | |

6. 위험물 처리시설용지(폐지)

| 위 치 | 구 분 | 계 획 내 용 | |
|---|---|---|---|
| 위험물 처리시설 용지 | 용지명 | 주유소 | 충전소 |
| | 용 도 | ○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<br>○ 부대시설<br>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) | ○ 액화석유가스 충전소<br>○ 부대시설(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호에 한함) |
| | 건폐율 | ○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(80%이하) | |
| | 용적률 | ○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(350%이하) | |
| | 고도제한 | ○ 30M | |
| | 건축선 | ○ 주출입구 정면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 ○ 입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| |

7.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에 따름

[별표# 2] 용도별 구획 평면도 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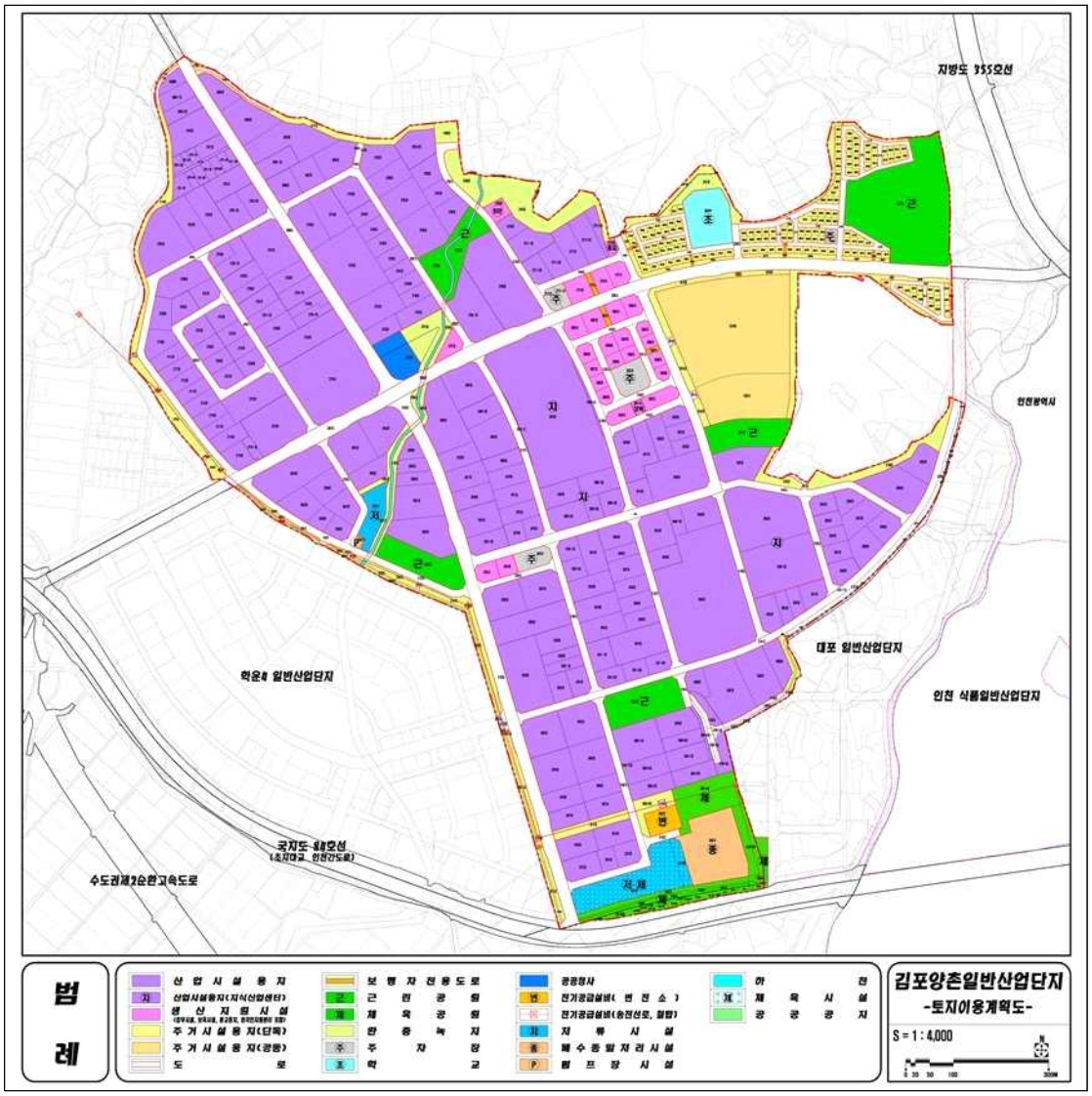

[별표# 3] 업종배치계획(변경)

■업종배치계획표

| 업종 | | 면적(㎡) | | | 구성비(%)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정 | 증감 | 변경 | 기정 | 변경 | |
| 합계 | | 939,328.6 | - | 939,328.6 | 100.0 | 100.0 | |
| 통합배치 | | 58,258.9 | - | 58,258.9 | 6.2 | 6.2 | |
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 | 41,289.8 | - | 41,289.8 | 4.4 | 4.4 | |
| |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(C17), 금속가공제품(C25), 가구제조업(C32) | 16,490.6 | - | 16,490.6 | 1.8 | 1.8 | |
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 | 105,333.8 | - | 105,333.8 | 11.2 | 11.2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 | 4,153.0 | - | 4,153.0 | 0.4 | 0.4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금속가공제품(C25), 가구 제조업(C32) | 6,850.6 | - | 6,850.6 | 0.7 | 0.7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39,283.3 | - | 39,283.3 | 4.2 | 4.2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8,936.1 | - | 8,936.1 | 1.0 | 1.0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섬유제품제조업 :의복제외(C13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3,036.9 | - | 3,036.9 | 0.3 | 0.3 | |
| |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2,720.3 | - | 2,720.3 | 0.3 | 0.3 | |
|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 | 5,506.4 | - | 5,506.4 | 0.6 | 0.6 | |
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C22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C18) | 1,717.0 | - | 1,717.0 | 0.2 | 0.2 | |
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섬유제품제조업 :의복제외(C13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4,068.2 | - | 4,068.2 | 0.4 | 0.4 | |
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 | 2,032.2 | - | 2,032.2 | 0.2 | 0.2 | |
| |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(C22),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 | 22,459.3 | - | 22,459.3 | 2.4 | 2.4 | |
| |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 섬유제품제조업 :의복제외(C13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C17), 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3,022.5 | - | 3,022.5 | 0.3 | 0.3 | |
| 1차 금속 | 1차 금속 제조업(C24) | 73,052.6 | - | 73,052.6 | 7.8 | 7.8 | |
| | 1차 금속(C24), 금속가공제품(C25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6,593.0 | - | 6,593.0 | 0.7 | 0.7 | |
| 금속가공제품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 | 72,669.2 | 감) 1,954.8 | 70,714.4 | 7.7 | 7.5 | |
| | 금속가공제품(C25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3,051.3 | - | 3,051.3 | 0.3 | 0.3 | |
| |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,가구 제조업(C32) | - | 증) 1,954.8 | 1,954.8 | - | 0.2 | |
| | 금속가공제품(C25), 섬유제품제조업 :의복제외(C13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 (C17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C21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 | 3,374.7 | - | 3,374.7 | 0.4 | 0.4 | |

| 업종 | | 면적(㎡) | | | 구성비(%)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기정 | 증감 | 변경 | 기정 | 변경 | |
| 기타기계 및 장비 |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 | 183,498.3 | 증) 1,832.8 | 185,331.1 | 19.5 | 19.7 | |
| | 기타 기계 및 장비(C29), 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11,250.5 | - | 11,250.5 | 1.2 | 1.2 | |
| | 1차 금속(C24),<br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8,089.7 | - | 8,089.7 | 0.9 | 0.9 | |
| | 금속가공제품(C25),<br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13,452.7 | - | 13,452.7 | 1.4 | 1.4 | |
| | 금속가공제품(C25), 전기장비(C28),<br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3,219.8 | - | 3,219.8 | 0.3 | 0.3 | |
|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<br>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,980.2 | - | 1,980.2 | 0.2 | 0.2 | |
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 | 29,769.1 | - | 29,769.1 | 3.2 | 3.2 | |
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<br>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 | 10,333.2 | 감) 1,832.8 | 8,500.4 | 1.1 | 0.9 | |
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,<br>섬유제품제조업:의복제외(C13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C22),<br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3,223.2 | - | 3,223.2 | 0.3 | 0.3 | |
| |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(C26),<br>금속가공제품(C25), 전기장비 제조업(C28) | 8,261.0 | - | 8,261.0 | 0.9 | 0.9 | |
| 의료·정밀·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C27) | | 32,308.7 | - | 32,308.7 | 3.4 | 3.4 | |
|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| 전기장비 제조업(C28) | 20,266.2 | - | 20,266.2 | 2.2 | 2.2 | |
| | 전기장비(C28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<br>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 | 3,607.0 | - | 3,607.0 | 0.4 | 0.4 | |
| 가구 및 기타제품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 | 13,219.6 | - | 13,219.6 | 1.4 | 1.4 | |
|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,<br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 | 3,357.6 | - | 3,357.6 | 0.4 | 0.4 | |
| | 가구 제조업(C32), 기타 제품 제조업(C33),<br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,<br>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(C17) | 9,655.5 | - | 9,655.5 | 1.0 | 1.0 | |
| 지식산업센터 | | 99,936.6 | - | 99,936.6 | 10.6 | 10.6 | |

※업종코드 13번은 학운리 2762, 2980-1, 2760, 2771-3, 2710, 2962, 2758, 2961, 3084, 2970번지에 한함[C13업종 중 13229번(기타 직물제품 제조업)에 한함]

※업종코드 21번은 학운리 2762, 2980-1번지에 한함[C21업종 중 21300번(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)에 한함]

※양촌산업단지내 모든 구역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(태양력 발전업(D35114)에 한함) 허용. 단, 관리기관에 입주계약, 구조물 설치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.

■업종배치계획도
(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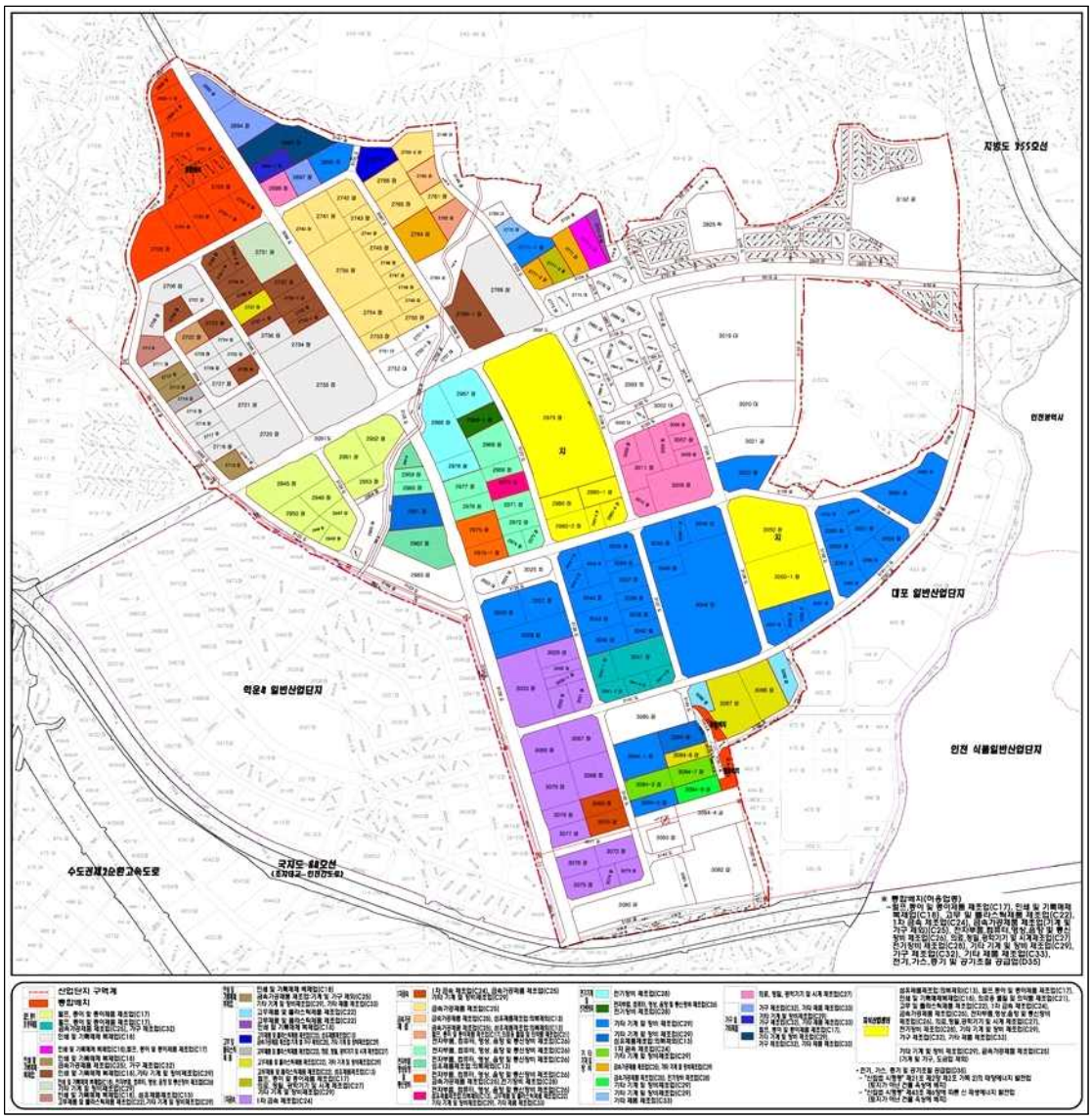

지방도 955호선
인천광역시
대포 일반산업단지
학운4 일반산업단지
인천 식품일반산업단지
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
국지도 68호선
(조지대교 - 인천가도로)

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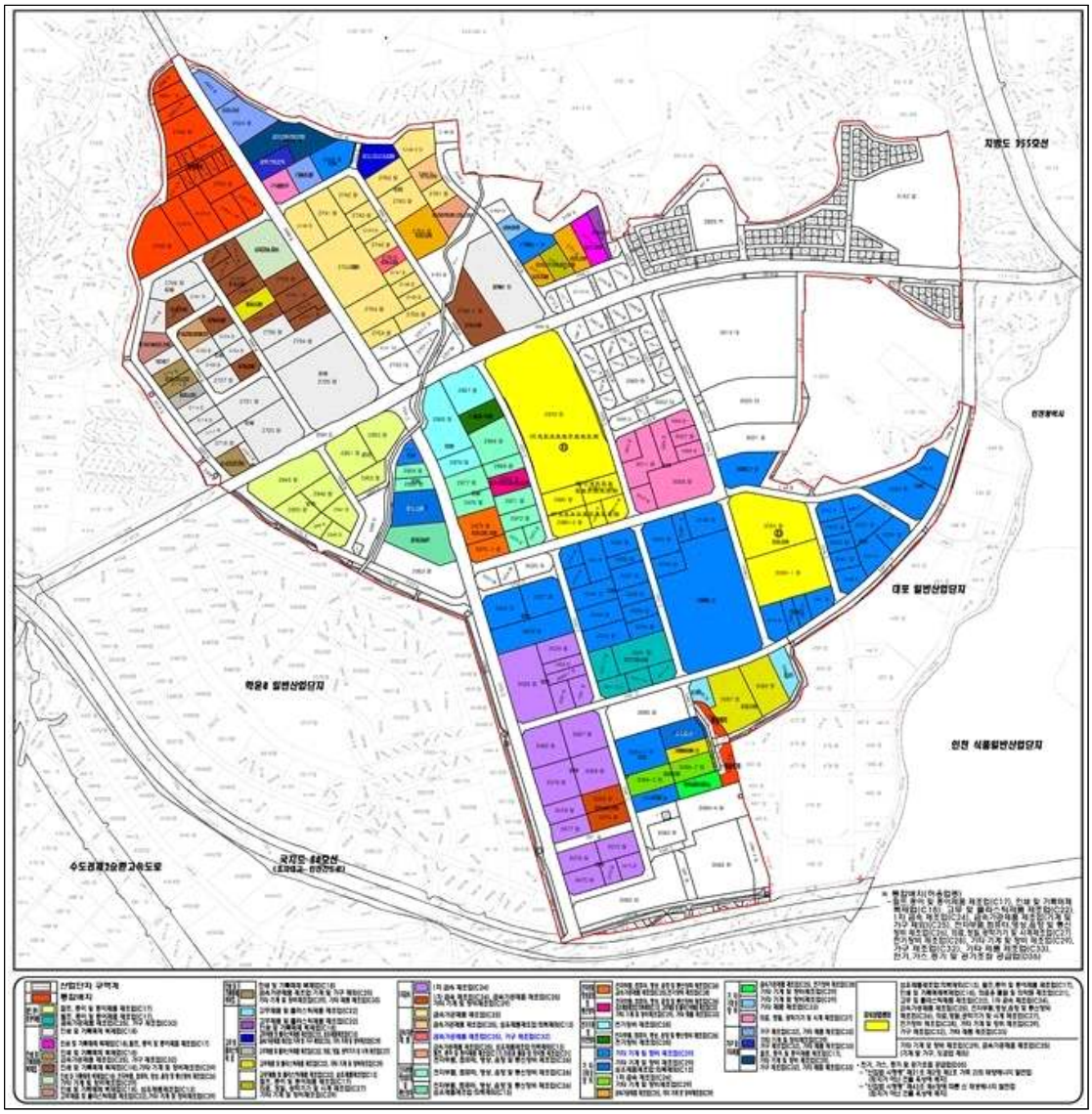


[별표# 4] 입주제한업종 (변경없음)

| 분 류 번 호 | 업 종 명 |
|---|---|
| 17110 | 펄프 제조업 |
| 17121 | 신문용지 제조업 |
| 17122 |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|
| 17123 |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|
| 17129 |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|
| 25922 | 도금업 |